

근로·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, 전년보다 10만원 ↑

- 8월 29일, 261만 가구에 '22년 귀속 정기분 2조 8,274억 원 지급 -

- (지급 개요)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」을 법정기한(9. 30.)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합니다.
- 총 261만 가구에 2조 8,274억 원을 지급하며,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*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입니다.
 - * (근로장려금) 단독가구 150→165만 원, 홑벌이가구 260→285만 원, 맞벌이가구 300→330만 원 (자녀장려금) 부양자녀 1명당 70→80만 원
- (심사결과)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, 자동응답시스템(☎ 1544-9944), 홈택스(모바일, PC), 장려금 상담센터(☎ 1566-3636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(기한 후 신청) 2022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(☎ 1544-9944), 홈택스(모바일, PC)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(상담) 문의 사항은 「장려금 상담센터(☎ 1566-3636)」에서 상담해 드리며,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. 29.부터 9. 15.까지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	책임자	과 장 김학선 (044-204-3801)
		담당자	사무관 이승철 (044-204-3817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준목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 임기향 (044-204-258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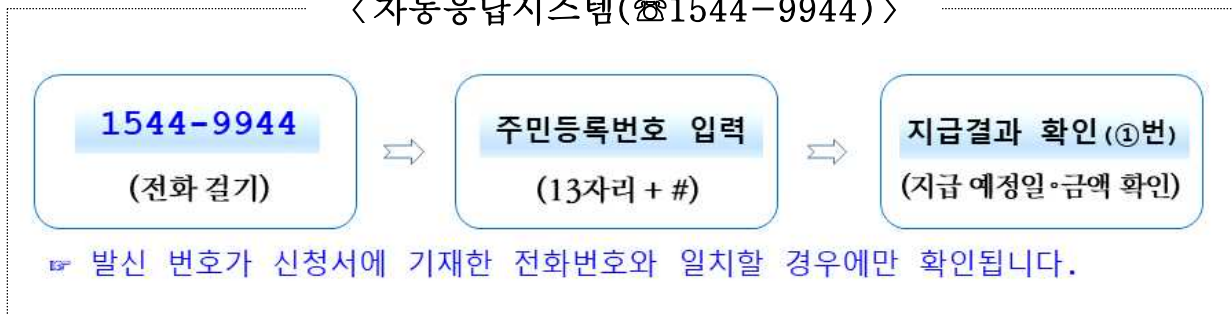
1

심사결과 확인 및 장려금 수령 방법

□ 심사결과 확인 방법

- 결정통지서(모바일 · 우편 발송) 또는 자동응답시스템, 홈택스, 장려금 상담센터(☎ 1566-3636, 운영기간: 8. 29. ~9. 15.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〈자동응답시스템(☎1544-9944)〉



〈홈택스(www.hometax.go.kr)〉

- ▶ 모바일 :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) → 심사진행현황 조회
- ▶ PC : 접속 → 세무업무별 서비스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심사진행상황

□ 장려금 수령 방법

-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.
-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(8월 28일 우편 발송)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-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*할 수도 있습니다.
 - * 접속 → 마이홈택스 →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→ 우편물보기
 -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, 국세환급금통지서,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.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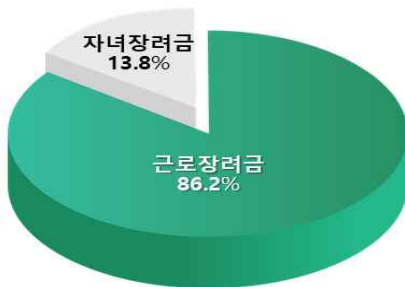
'22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현황

□ 지급 규모 (그래프: 가구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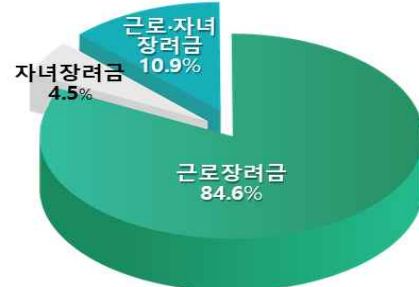
(만 가구, 억 원)

합 계		근로장려금		자녀장려금	
가구	금액	가구	금액	가구	금액
261	28,274	225	24,807	36	3,46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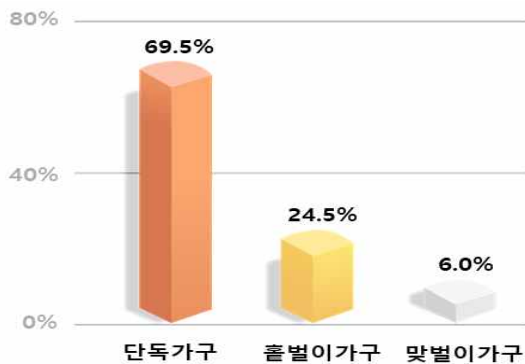
|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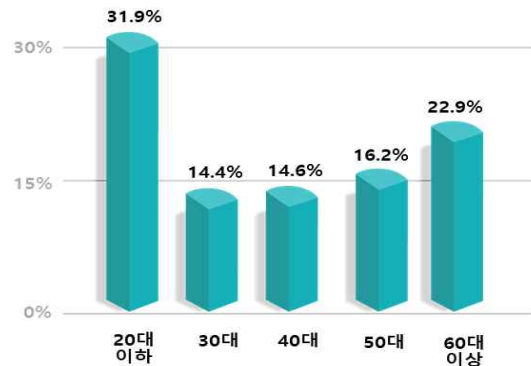
| 장려금 수령 종류별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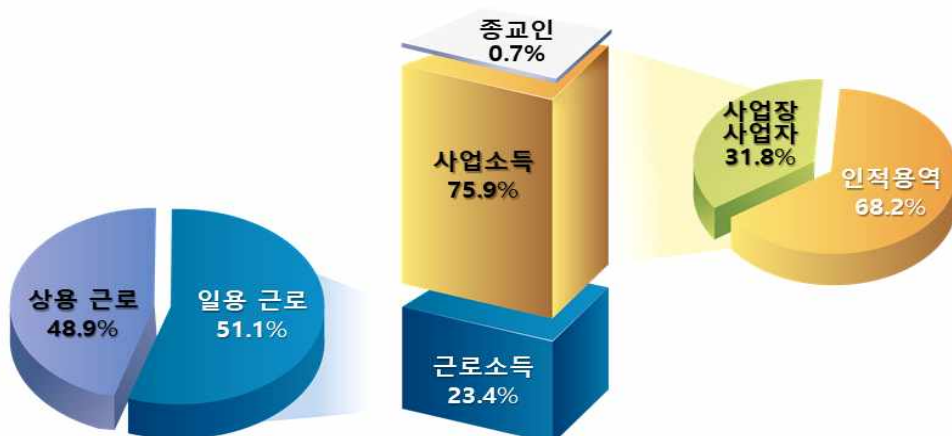
| 가구 유형별 |



| 연령대별 |



| 소득종류별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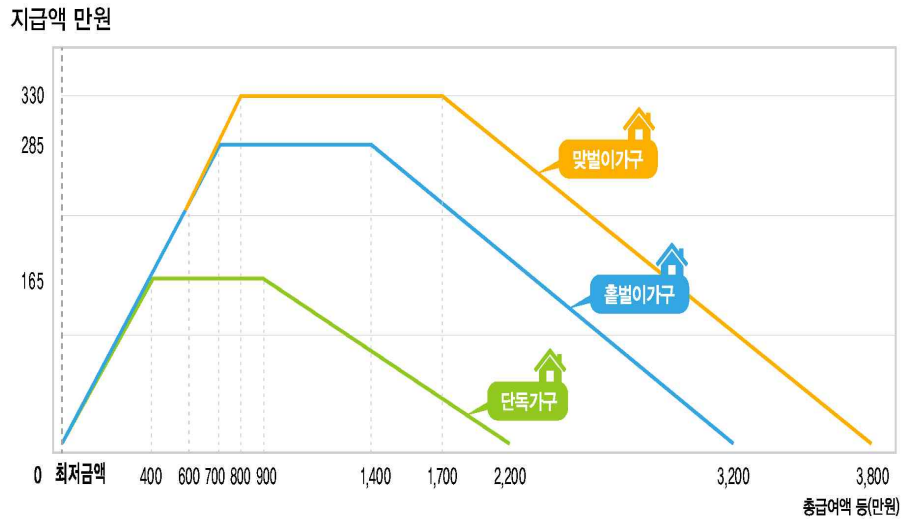


참고 1

소득구간별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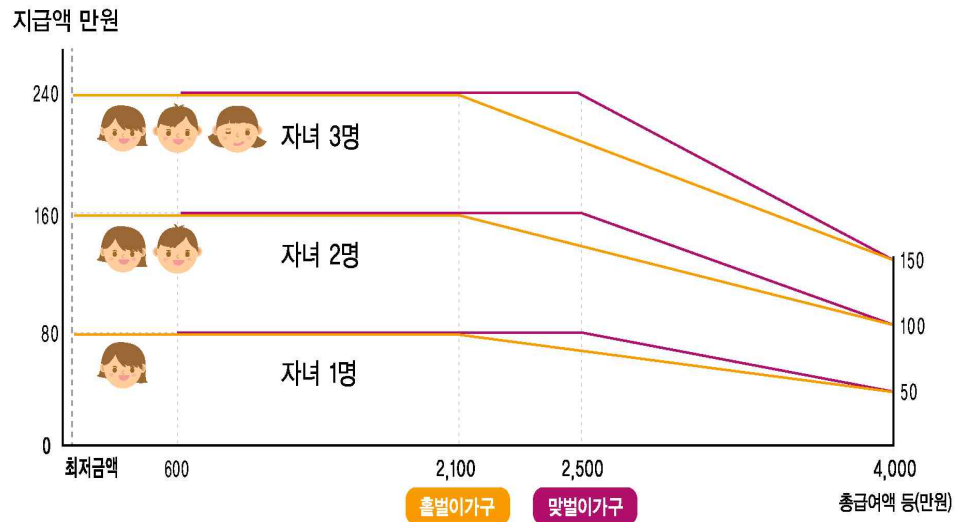
근로장려금

단 독 : 3~165만 원
 홑벌이 : 3~285만 원
 맞벌이 : 3~330만 원



자녀장려금

18세 미만
 자녀 1명당
 50~80만 원



참고 2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

□ 가구 유형 ('22. 12. 31. 기준)

단 독 가구	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 ¹⁾ , 70세 이상 직계존속 ²⁾ 이 모두 없는 가구
홀벌이 가구	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)
맞벌이 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1)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

2)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&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

□ 신청 요건 (근로, 사업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·재산 요건 충족)

소득요건 (부부합산)	◇ '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				
	가구 유형	근로장려금			자녀장려금
	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	
	총소득* 기준금액	2,200만 원	3,200만 원	3,800만 원	4,000만 원
*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·퇴직·양도소득은 제외					
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	◇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.4억 원 ¹⁾ 미만 ('22. 6. 1. 기준)				
	토지·건물·승용차(기준시가), 전세금 ²⁾ , 금융자산(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), 유가증권(상장: 시가, 비상장·채권: 액면가), 회원권·조합원 입주권(불입액)				
	1)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1.7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% 감액 2) (주택) Min[간주전세금(기준시가의 55%), 실전세금], (상가) 실전세금				

신청 제외

- '22.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다만,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)
- '2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(배우자 포함)